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 관련 유권해석 통보 및 주의 촉구

1. 우리 부 보건의료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의료법 제27조제3항(소개말선유인) 및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요청 받은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 의료기관 할인쿠폰 판매'와 관련된 유권해석 결과를 불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의료쿠폰·시술권 등의 공동판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회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임 : 질의 회신(서울특별시). 끝.

보건복지



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 대한한 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주무관 정기모 행정사무관 심은혜 보건의료정책과 전결 04/15
장 박인석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95 (2011. 04. 15.) 접수
우 110-793 서울특별시 송로구 을곡로 7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mw.go.kr

전화 02-2023-7277 진송 02-2023-7277 / lostintm@korea.kr / 대국민공개
도약취요 고마워요 희망의 전화 129



편이되는 평생진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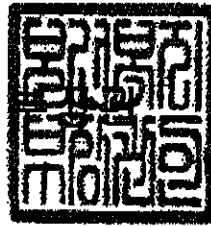
제목 질의 회신(서울특별시)

1. 보건정책과-102845(2011.3.23)호로 '인터넷 소셜커머스사이트 의료기관 할인의료쿠폰 판매'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본인부담금'의 범위에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형벌법규의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의 '유인'이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2007도10542, 2008.2.28)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이라는 수단으로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다만, 대법원은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판시(대법원 2004.10.27.선고 2004도5724 판결)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특정 사이트(소셜커머스)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할인된 의료 쿠폰, 시술권 등을 공동판매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끝.

보건복지



주무관

권형원

해청시무관

조승아

의료자원과장

전길 03/28

이창준

협조사

시행 의료사원과-2858

(2011. 03. 28.)

접수

우 110-793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 <http://www.mw.go.kr>

전화 02-2023-7318

전송 02-2023-7333

/ khw/547@korea.kr

/ 대국민공개

도와줘요 고마워요 희망의 전화 129